

전 주 지 방 법 원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2020가단: 부당이득금
원 고
전주시
소송대리인 변호사
피 고
전북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
전종필 사무소 (만성동) (송달영수인 : 전종필)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 정 사 항

1.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,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,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청 구 원 인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020. 10. .

판사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